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98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 임호선 · 정준호 · 문대림

윤호중ㆍ채현일ㆍ이상식

김재원 · 권향엽 · 김동아

김민석 · 오세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 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 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포기 동물 (제44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 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 제3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7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1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이 나 유실·유기동물 또는 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 위를 한 자
- 제10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니면서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	⑤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
	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
	포기 동물(제44조에 따라 동
	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
	•군•구에 귀속된 동물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기증받거
	나 인수하는 행위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 ⑥ (생 략)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
	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u>된다.</u>
<u>⑦・⑧</u> (생 략)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 12. (생 략)

⑥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신 설>

 1. (생 략)

 2. ~ 9. (생 략)

 ② ~ ⑤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0조제5항제5호를 위반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 또
는 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
나 인수하는 행위를 한 자
6.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세101조(과태료) ①
·.
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
호시설운영자가 아니면서 보
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
나 광고를 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